

=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4. 7 - - - - 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4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08. 4. 2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하태생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재산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당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일부 부지의 매각 기피에 따라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접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함.

《취득재산 변경현황》

구 분	소 재 지	지 목	면 적(m ²)		사 업 비 (시설비포함)	비 고
			부 지	건 물		
당 초	계		252	209.61	589백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지매입:149m²증가 • 건물매입:71.11m²감소
	당리동 78-1	대지	173	72.22		
	당리동 79-1	대지	79	137.39		
변 경	계		401	138.5	589백만원	※ 주차장 20면 건설
	당리동 78-1	대지	173	72.22		
	당리동 83-18	대지	228	66.28		

3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제10조) 및 동법 시행령(제7조)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(제1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

- 주차여건이 열악한 당리동 78-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. 12. 24. 우리구 의회로부터 사업대상 부지 2필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았으나
- 이중, 당리동 79-1번지는 부지 소유자가 생업수단 상실 등을 이유로 토지 매각을 계속 기피하고 있음

나. 이러한 여건 하에서

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리동 83-18번지 대체부지는 당초 계획부지에 비해 면적도 늘어나고, 입지여건도 좋아진 반면, 사업비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음.

《사업부지 대비》

구 분	위 치	부지면적	사업비	주차장 형태
당초부지	당리동 79-1	79m ²	589백만원	공작물식
대체부지	당리동 83-18	228m ²	589백만원	지평식

※ 부지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건물면적이 감소되어 사업비 불변

다.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

- 당초 대상부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매입 협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

- 변경계획안과 같이 인접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